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처리

\*\*\*\*\*가 강남구 역삼동 \*\*\*\*\* 부동산을 2015.8.28.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【감면신청 등】의 규정에 의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감면결정 처리코자 합니다.

### 가.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

법 인 명	*****		법인등록번호	*****			
주 소	***** **		등기등록의종류	과세대상물건			
물 건 지	강남구 역삼동 *****		매 매	토지(㎡)	건물(㎡)		
				717.4	3563.28		
세 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감면세액	신고세액	감면비율	
합 계			1,114,408,210	557,204,110	557,204,100		
취 득 세	24,226,265,658	4%	969,050,620	484,525,310	484,525,310	50%	
농 특 세	부과	24,226,265,658	0.2%	48,452,530	24,226,270	24,226,260	50%
	감면	484,525,310	20%	96,905,060	96,905,060	0	비과세
교 육 세	24,226,265,658	0.4%	96,905,060	48,452,530	48,452,530	50%	

### 나. 관계법령

(1) (구)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【취득세의 면제 등】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%감면하고 「지방세법」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(2) (현) 조세특례제한법 부칙<법률 제12853호,2014.12.23.> 제72조(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·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 제4항 제3호(2014.12.23. 삭제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즉 취득세 50% 감면**

